

해바라기유·카놀라유 혼합 오일

I 사례 개요

- 사 례 번 호: NY N330420 (2023.02.14.)
- 쟁 점 사 항: 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
- 최종 수출국: 튀르키예
- 최종 원산지: 우크라이나



II 사실관계

용도	• 튀김 및 기타 식품용		
재료		우크라이나	• 해바라기유 • 카놀라유
Sourcing 및 공정 흐름도	Sourcing ▾  우크라이나  해바라기씨유 (Sunflower Oil)  카놀라유 (Canola Oil) 해바라기씨유, 카놀라유 생산 Manufacturing ▾  튀르키예  STEP 1 STEP 2 STEP 3 STEP 4 우크라이나 오일 수입 정제 공정 수행 혼합 공정 수행 벌크 포장 Export ▾  튀르키예 최종 수출		
상세 공정		우크라이나	• 해바라기씨와 카놀라씨 재배 및 수확 • 불순물 제거 후 압착하여 해바라기유와 카놀라유 생산
		튀르키예	•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유와 카놀라유 정제 • 정제된 해바라기유와 카놀라유를 혼합 • 벌크 포장

III 판정 결과

《CBP의 판정》

- ☑ CBP는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유와 카놀라유를 튀르키예에서 정제·혼합하는 공정으로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,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 혼합유의 원산지를 우크라이나로 판정함

➔ 원산지 표시 목적상 최종제품의 원산지는 우크라이나

Ⅳ 시사점

- ⊙ 식물성 유지류의 경우 씨앗에서 오일을 추출하여 원재료와 구별되는 새로운 상거래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은 실질적 변형이 인정될 수 있으나, 이미 생산된 식물성 오일을 추가로 정제·혼합하는 정도의 가공은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CBP의 참고 판정 사례

물품명	아로마테라피 제품
사례번호	NY N344934 (2025.01.30.)
쟁점사항	원산지 표시를 위한 원산지 판정
사실관계	• [인도] - 천연 멘톨 결정, 유칼립투스 잎 오일, 윈터그린 잎 오일, 정향 줄기 오일 생산 • [중국] - 천연 장뇌 분말, 테레빈수 수피 오일, 페퍼민트 잎 오일 생산 • [스리랑카] - 인도산 블랙커민씨를 가공하여 블랙커민씨 오일 생산 - 여러 원료를 정해진 배합식에 따라 혼합 - 혼합물을 용기에 충전하고 밀봉 및 포장
판정 결과	• 스리랑카에서 인도산 블랙커민씨로부터 오일을 추출하는 공정은 씨앗과 구별되는 새롭고 상이한 상거래 물품인 블랙커민씨 오일을 생산하므로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며, 이에 따라 블랙커민씨 오일의 원산지는 스리랑카로 판정됨 • 다만, 중국, 인도, 스리랑카산 원료를 스리랑카에서 정해진 배합식에 따라 혼합, 충전, 포장한 후에도 각 원료의 기본적인 특성이 본질적으로 유지되므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으며, 이에 따라 최종 소매포장 및 용기에 “Product of China, India, and Sri Lanka”로 표시할 것을 권고함

유의사항 : 유사한 물품일지라도 사실관계(원재료, 제조과정 등) 및 최종제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원산지 판정이 달라질 수 있음